

2005년(2004년 귀속) 종합소득세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해야

2005년도판 「세금절약가이드」 발간

국세청(청장 이주성)에서는 납세자들이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세금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한편,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방편으로 2004년에 개정된 세법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한 2005년도판 '세금절약가이드' 및 '부동산과 세금' 책자를 새로이 제작 발간했다.

발간된 책자는 일선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비치하여 내방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정홍보용으로 활용하는 한편, 책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부담없이 구입해서 볼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판매서점을 통해 실비(권당 3천원)로 판매하며, 책자의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에도 게재하여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- 참조 : 홈페이지(www.nts.go.kr) 국세정보서비스 국세청발간책자
- 문의 : 자료생산과, 납세홍보과 02-397-1552~3

「통신단말기 대금 계좌이체」도 현금영수증 발급

- 국세청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
 - KT · KTF · LGT · SKT 등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통신단말기(휴대전화 단말기, PDA 등)를 할부 구입하고, 그 대금을 통신요금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.
- 통신단말기를 할부구입 한 경우에 그 대금은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고, 소비자는 이 청구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.
 - 이 경우 대금 청구서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전화요금과 소득공제 대상인 통신단말기 구입대금이 통합되어 있어 단말기 대금만을 구분하는데 시스템 상 어려움이 있으며,
 - 소비자가 단말기 구입 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서비스센터 등에 방문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다.
- 이에 국세청은 통신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
 - 소비자가 통신요금 고지서에 포함된 단말기 대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면

- 납부 내역은 납부일로부터 2~7일내에 금융기관에서 이동통신사로 통보된다.
- 소비자는 납부내역이 이동통신사로 통보된 다음날에 해당 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현금영수증을 조회 · 출력할 수 있으며
- 그 내역은 다음날 국세청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자동 통보되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문의 : 자료생산과, 부가가치세과 02-397-1712~4

2005년(2004년 귀속)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

- 국세청에서는 전자신고 활성화, 맞춤형 신고안내 및 신고대리 지원을 통해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.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무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적으로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(2만원)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.
- 회원 중 세무서로부터 개별적으로 '종합소득세 성실 신고 안내문'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안내사항을 이번 신고에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2002년 귀속분부터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 제도를 새로이 시행하고 있다. 증빙서류를 갖춰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종전보다 세금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- 2004년도에 지급받은 이자 ·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개인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신고서는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.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대리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우송한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자가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.
- 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하고, 세금은 5월 31일까지 전국 우체국 또는 국고수납 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, 통합 신고한 주민세는 별도의 납부서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.
- 지역업자 과세표준 정상화의 일환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하여 가맹점 가입 및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한다.
- 문의 : 국세종합 상담센터 1588-0060

자료제공 및 문의

국세청 납세홍보과(02-397-1564) E-mail : ho25400@nts.go.kr